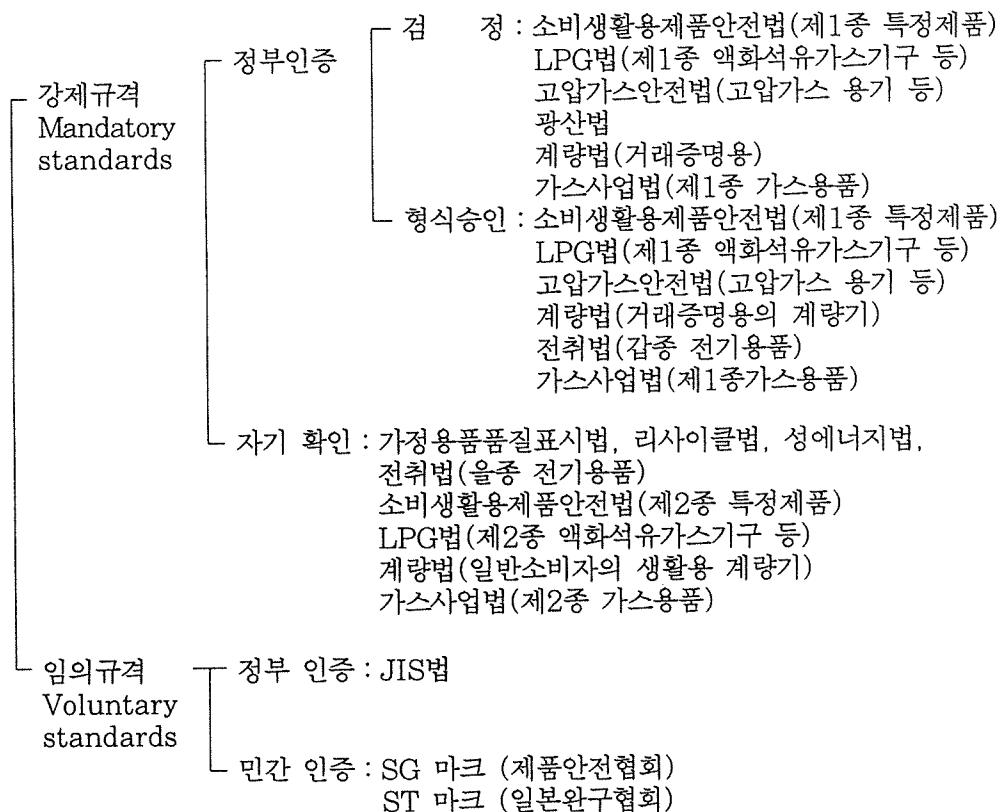


◆ 특집 ◆

한·일의 전기관련 인증제도 소개

I. 일본의 인증제도

1. 기준 및 인증제도의 개요



주) 강제규격 : 일반 법령으로 준수를 의무화하는 규격

임의규격 : 기술사양 등으로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규격

정부인증 : 정부 및 위임기관의 심사 등으로 일정 기준에 대하여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자기확인 :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검정 : 개개의 제품마다 검사를 하는 것

형식승인 : 제품 형식에 대해 성능검사를 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승인하는 것

공장인정 : 공장검사를 통해 특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제3자인증 : 제조업자가 제3자 기관의 시험증명을 받아, 스스로 안정성 확보를 선언하는 것

2.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절차

가) 배경

- 일반적으로 인증제도는 생명·건강의 보호, 소비자 보호 혹은 환경보호 등의 합리적인 목적으로 제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래 수입제품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격 등이 국제적으로 널리 채용됨에 따라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거나, 인증제도가 수입품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면,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그래서 각국은 GATT·동경 라운드의 일환으로서 각국의 규격, 검사절차, 인증제도의 제정운용이 국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해가 되지 않음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GATT·TBT협정(旧 TBT협정)을 체결하고, 강제규격, 임의규격 및 인증제도의 제정, 운용에 있어서 국제 규격에 대한 적합성, 규격 등 제정시의 투명성 확보(통보 등) 의무를 정하게 되었다.

현재는 1995년에 발효된 GATT/WTO TBT협정(신 TBT협정)에 의해, 새로운 절차가 필요시되는 사항이 규정되었다.

중앙정부에 새로운 절차로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입안, 제정시에 WTO사무국에 대한 통보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기관은 지방정부기관에

관해서는, WTO사무국으로의 통보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또 비정부기관이 임의규격의 입안, 제정 및 운용을 행하는데 있어서 규정부속서 3을 준수시키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 더욱이, 일본 경제의 가일층 국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여당 대외경제 대책추진본부에 설치된 액션프로그램 실행추진위원회(위원장 : 내각관방장관, 1985년 7월 설치)에서 신규기준·인증제도를 창설할 경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공개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 용어의 정의

- **강제규격** : 제품의 특성 또는 그 관련 생산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문서로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
- **임의규격** : 제품 또는 관련 생산 공정 혹은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일반적 및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하는, 인정된 기관이 승인한 문서로서 엄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것.
- **적합성평가절차** : 강제규격 또는 임의규격에 관련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음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절차
- **중앙정부기관** : 중앙정부 또는 그의 이 협정에 관계되는 활동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
- **지방정부기관** :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 그외 이 협정에 관계되는 활동에 관해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 감독하에 있는 기관
- **비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관 및 지방정부 기관 이외의 기관

나)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련한 필요한 절차

(1) WTO/TBT협정에 의거한 것

① 사전의도공고(2.9.1.5.6.1, 부속서 3L)
강제규격, 임의규격 및 적합성 평가제도를
도입·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전에 출판
물에 공시할 것

구체적으로는 통상홍보, 통산성 공보에 게재
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60일간 이상으로 할 것

② WTO 통보(2.9.2 2.10.1, 5.6.2 5.7.1)

강제규격 및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강제규격안 및 적
합성 평가 절차안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당해 안의 목적 및 필요성과 함께
WTO사무국을 통해 다른 체결국에 조속히
통보할 것

구체적으로는, 당해 제도의 대상제품, 목
적 등을 기재하고 60일간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과 우송절차기간(약 2주간)을 고려하여
WTO사무국에 송부

(2) 액션프로그램 실행추진위원회 결정에
의거한 것

① 事前공시

규격·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원안책정 과
정에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한 관계자로부터
의견청취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규
격·기술기준의 제정을 검토하는 심의회, 전
문위원회 등에서 외국인 관계자가 참가하여
의견을 진할 수 있도록 해당 기회를 마련하
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공시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의회 등의 개최일 3주 전
까지 통상홍보, 통산성공보, NEWS FROM
MITI에 게재

② 내각官房심사

인증제도의 창설·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기준인
증제도 등 부회의 사무국인 내무부에 연락하
여 심사를 받는다.

3. 에너지의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가) 법률·제도의 목적

공장, 건축물, 기계기구에 대한 에너지사용
의 합리화에 관한 소요의 조치 기타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므로서 국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법률·제도의 개요

① 제조사업자 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계기구 중 자동차 기
타 일본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또한 그 사
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
계기구로서 해당성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것(특정기기)에 대해서는 통산대
신(자동차에 있어서는 통산대신 및 운수대
신)은 특정기기마다 당해 성능 향상에 관해

제조사업자 등(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계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행하는 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② 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통신대신은 제조사업자 등으로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되는 특정기기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제조하고, 또는 수입하는 특정기기에 대해 ①에서 규정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비추어 에너지 대비에 있어서 기계기구의 성능 향상을 상당 정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에 대해 그 목표를 제시하고,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되는 해당 특정기기의 해당 성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할 수가 있다.

③ 표 시

통신대신은 특정기기에 대해서 특정기기마다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a) 특정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해 제조사업자 등이 표시해야 하는 사항

(b) 표시방법 기타 에너지 소비효율의 표시에 있어서 제조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④ 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 권 고

통신대신은 제조사업자 등이 특정기기에 대해서의 고시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

에는 해당 제조사업자 등에게 대해 그 제조 또는 수입에 관계되는 특정기기에 대해 그 고시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표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할 수가 있다.

○ 공 표

통신대신은 (1)의 권고를 받은 제조사업자 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명령

통신대신은 (1)의 권고를 받은 제조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해당 특정기기에 관계되는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령에서 정하는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제조업자 등에 대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다.

4. 일본의 인증제도로서 향후 전망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전기용품취체법, 가스 사용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보안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노동 안전위생법, 약사법, 소방법, 도로운송차량법, 화학물질의 심사 및 재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기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은 점진적으로 일본공업규격(JIS)을

인용하고, JIS 규격이 없는 품목은 재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 기술기준 및 JIS 규격 제(재)정시는 국제규격이 있는 기준을 국제규격에 정합되도록 추진중이다.
- 1997년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JIS 비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ISO/IEC Guide 25 및 58을 근거로 시험사업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JIS 자기적합표시제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자기적합성에 관한 지침인 ISO/IEC Guide 22에 의거, JIS 비지정 품목에 대한 자기 적합선언에 관한 지침이 JIS Q0022(공급자의 적합선언에 관한 일본 기준)로 재정된 바 있다.

- 따라서 일본은 APEC, 일·EU, ASEN, OECD 등 국제단체에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을 대비하여 국내 인증과 관련되는 법적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일부 정비하였으며, 수년내로 정비가 완료되어 모든 인증제도가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한국의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병행하여 제품에 대한 규격과 이와 연계하여 인증제도가 태동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국내에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체제가 유사한 일본의 제도를 용이하게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로 정착하여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관련법

- 산업표준화법

(KS, 1961년 제정)

(1992년까지는 공업표준화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본의 관련법

- : 공업표준화법

(JIS)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취체법

-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보안법

- 약사법

: 계량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약사법

- 전파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전기통신사업법

-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과거의 GATT에서의 TBT협정이 WTO/TBT 체제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도가 국제적인 지침 및 규격에 부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무역에서 과거의 관세제도 등 국익을 위한 수입억제정책에서 자국민의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 차원의 기술기준과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기술장벽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기술기준에 의한 인증제도가 무역에서의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배제

하기 위하여 EU 지역은 물론 OECD 및 APEC 내에서 MRA가 추진되고 있고 또한 EU와 역외 국가간 MRA도 또한 확산되는 등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고 있다.

-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1996년에 제8차 공업표준화추진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JIS의 적합성평가제도의 민간개방과, 1998년에는 JIS를 백지상태에서 총 점검하고 특별법률에 의한 강제 인증제도와 JIS와의 연계, 기술기준과 표준화의 일원화, 시험소인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JIS와 기술기준의 국제규격에의 정합화 등 인증제도의 개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제법규와 공업표준화법의 지정·인정 기관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시험기관의 요건에 합치할 경우는 가능한한 상호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증체계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의 각 연방, 주, 지방정부 및 민간인증 제도에 의한 각종 시험검사 및 인증제도가 국제적인 제도와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제도간에 중복 적용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제조기업에 막대한 비용의 부담 및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1995년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촉진법을 제정하여 미국내 연방정부

기관, 주 및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민간 표준화기구 및 적합성평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연방정부기관인 NIST가 종합 관리하는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술기준의 경우 ANSI를 기준으로 제정된 UL 1950(정보기기 및 사무기기의 안전요구사항)은 국제규격인 IEC 950과 상이하여 외국기업이 미국으로 수출시 많은 비난은 물론, 미국내 제조기업은 수출을 위하여 별도의 기술기준에 의한 설계와 생산이 요구된다. >

2. 정보기기(전자파) 인증제도

- ◊ 근거법률 : 전파법 제29조의 5(전자파 적합등록)
- ◊ 담당부처 : 정보통신부 감리과
- ◊ 인증기관 : 전파연구소
- ◊ 인증방식 및 대상품목
 - 인증방식 : 전자파 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게 하는 강제인증방식
 - 대상품목 : 아래의 기기로서 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기
 - 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이용기기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고주파

이용설비는 제외)

- 자동차 및 불꽃점화엔진구동기기류
 - 방송수신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류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정보기기류(현재 유일하게 대상기기로 고시된 품목임. 모니터 및 프린터는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므로 제외)
- ◇ 지정시험기관
- (1) 구비요건

- ① 야외시험장 또는 대용시험실
- ② 시험요원(3인 이상)
-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구비할 것.
- ④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 ISO/IEC Guide 25와 비교 : 적용되지 않음.
- (2) 지정시험기관 : 삼성전자(주) 등 30여 기관